

1986. 7. 5
제 1298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도관
편집인 : 영도관리사무소
전화 : 731-6111-3
인쇄처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선 길	공 보 관	간 제 (공 민 단)	총 보 계 장
접 수 일 지	1986. 7. 5		보 도 계 장
처 리 과	영 도 관		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- 제 446 호 : 하천공사시행허가 3
- 제 447 호 :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4
- 제 449 호 :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 5
- 제 450 호 :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중변경고시 6
- 제 451 호 : 사료성분등록 7

◎ 공 고

- 제 388 호 : 제 2 중 천기공사업체 면허취소처분 7

< 이 번 제 속 >

공									
합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워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구공고	
동내문구제 31호 : 직인개각공고	8
◎ 예규	
제 479호 : 서울특별시공무원증발급 규정개정	8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46 호

하천공사시행허가

하천법 제 23 조에 의한 하천공사

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을 고시함.

1986. 7. 5

서울특별시장

허가년월일	위 치	목 적	허 가 내 용	준공기간	감리기간	비고
'86.7.3	서울특별시 성동 사근동 기점: 120-3 종남: 120-21	제방도로축조	면적: 21,614㎡ (부지) 방수계: 627 m 호안: 10,063㎡ 도로: 627 m	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	감시역지 일로부터 15 일 이내	한강유역관리청 허가

계 천 예 정 지

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
사 근 동	103-3	잡 종	155	사 근 동	107-14	터	271
"	102-13	잡 종	1,266	"	107-15	터	96
"	102-15	전	155	"	107-16	터	119
"	105-3	잡 종	30	"	107-17	도로	36
"	107-1	전	803	"	107-18	터	126
"	107-2	전	1,762	"	107-19	터	92
"	107-4	대	1,940	"	107-20	전	59
"	107-6	전	258	"	107-21	전	221
"	107-7	전	370	"	107-24	전	112
"	107-9	대	96	"	107-25	전	17
"	107-10	전	1,028	"	107-26	전	145
"	107-11	전	63	"	107-27	전	142
"	107-13	잡 종	50	"	107-28	전	116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사근동	107-29	전	152	사근동	115-10	잡종	698
"	107-30	전	149	"	115-12	전	906
"	107-31	전	102	"	115-14	전	899
"	107-32	전	132	"	115-16	잡종	1,124
"	107-33	전	132	"	115-18	전	830
"	107-40	전	238	"	116-5	전	909
"	107-47	전	988	"	119-3	전	817
"	107-8	전	116	"	120-6	전	1,263
"	108-1	전	2,340	"	120-7	전	744
"	108-2	대	43	"	120-29	전	2,083
"	114-3	잡종	727	"	120-31	전	811
"	115-7	전	1,157	"	120-33	전	1,610
"	115-8	전	942		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47 호

하천점용 및 공작물설계허가

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

설치 허가를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 함.

1986. 7. 5.

서울특별시장

허가년월일	위 치	부 적	허 가 내 용	피허가자
'86.7.3	성동구 마장동 767번지전 (제2마장교 옆)	'88올림픽사업과 관련한 화양 S/S -성동 S/S와의 전력연결작업	1. 점용면적 : 622㎡ 2. 점용기간 : 영구 3. 공작물의 내용 : 지중관로	한국전력 공사사장 : 박정기

㉠ 서울특별시고시제 449 호
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
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별

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 1986.7.5
 서울특별시

도 시 공 원 시 설 사 용 료

종 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
서울대공원 운동시설 지구내 운 동시설	간이실내수영장	어 른 1회	2,200	
		청소년 1회	1,700	
		어린이 1회	1,100	
	실외수영장	어 른 1회	1,900	
		청소년 1회	1,500	
		어린이 1회	1,000	
	하이스라이드	1회	100	
	롤러스케이트	어 른 1회	800	
		청소년 1회	600	
		어린이 1회	400	
	스케이트장	어 른 1회	900	
		청소년 1회	700	
어린이 1회		500		
서울대공원 운동시설 지구내 유 희시설	스카이카이클	어 른 1회	500	
		청소년 1회	400	
		어린이 1회	300	
	다목적위통	어 른 1회	400	
		청소년 1회	300	
		어린이 1회	200	
	스핀제어	어 른 1회	400	
		청소년 1회	300	
		어린이 1회	200	

종 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
서울대공원 운동시설 지구내 유 회시설	회 전 목 마	어 른 1 회	300	
		청 소 년 1 회	200	
		어 린 이 1 회	200	
	허 니 문 카	어 른 1 회	400	
		청 소 년 1 회	300	
		어 린 이 1 회	300	
	동전 투입놀이	소형 정치물	200	
		카니발게임	200	
		전자사격장	200	

◎ 서울특별고시제 450 호

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중변경고시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
별표2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서울시

고시 제 336 호(86.5.22) 중 “장안평
수영장 사용료”를 다음과 같이 변경
고시한다.

1986.7.5

서울특별시 장

변 경 전

구 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
운동시설	장안평수영장 사용료	어 른 1 회	1,000	
		청 소 년 1 회	800	
		어 린 이 1 회	500	

변 경 후

구 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
운동시설	장안평, 보라매, 경희궁 공원내 수영장 사용료	어 른 1 회	1,000	
		청 소 년 1 회	800	
		어 린 이 1 회	500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51호
사료성분등록
 사료관리법 제22조 제3호의 규정
 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 1986. 7. 5
 서울특별시장

사료성분등록사항

등록번호	업종명	소재지	대표자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 또는 용도	성분량 (%)					
						조단백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
4-1	양성사료	성수2가	경태원	양계용 애합사료	산란초기 유색계용 (산란초기~40주)	이상 14.5	이상 2.5	이하 6.0	이하 14.0	이상 3.0	이상 0.5
4-62	공업용	323		"	중계종계용 (육계종계용)	15.0	"	"	"	"	"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88호
제2종전기공사업체면허취소처분
 전기공사업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의거
 아래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 1987. 7. 4
 서울특별시장

면허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처분사항	사 유
2종192	천일산업	종로구 낙원동 148	박용복	면허취소	전기공사업법 제7조위반

구 공 고

◎ 동대문구공고제 31 호

직 인 개 각 공 고

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2조 제 3
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직인 및 계

3. 인 영

인을 개각하였기에 동규칙 제 6 조
에 의거 공고한다.

1986. 7. 5

동대문구청장

1. 직인명

○ 전농제 1 동장의 직인 및 계인

2. 사용개시 및 구인폐기일자:

1986년 8월 1일

개 작 인

폐 기 인

인
영



공인명

전농제 1 동장의 직인 및 계인

예 규

◎ 서울특별시예규제 479 호

서울특별시공무원증발급규정개정

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중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1 항 중 "기관의장"을 "기
관의장"에 "계" 로 한다.

제 4 조 제 3 항 중 "촬영한" 을 "적
은" 으로 한다.

제 9 조 제 1 항 중 "3항" 을 "4항"
으로 하고 동조에 제 3 항 내지 제

-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③ 발급권자는 소속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 - ④ 발급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할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 1. 30일 이상 외국에 여행을 하게된 때
 2.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된 때
 3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된 때
 - ⑤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

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제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(별지 제 1호), 서식을 변경되 같이한다.

1986. 7. 7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(2) (서식개정등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정 규정의 변경사항을 보완(비고란 활용) 계속 사용할 수 있다.

공 무 원 증 발 급 대 장

결재	공무 원증 번호	발급 년월일	소속및 직위	직급	성명	주민등 록번호	신규 재발급	회수 여부	재발급 사유	일시 회수	변환 사실	비고